

EU 지속가능보고지침 (CSRD)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영주 한국변호사, 법학박사

법무법인(유한) 세종
(yjukim@shinkim.com)

현정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종
(jhyun@shinkim.com)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은 EU의 지속가능금융패키지의 주요 입법 중 하나이며, 2023년 1월 5일 발효되어 현재 EU의 입법으로 시행 중이다. 「CSRD」는 2014년 10월 제정된 「NFRD」를 비롯해 기업경영보고의무 등을 다루는 일련의 EU 지침 및 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CSRD」는 기존 「NFRD」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나아가 그 외의 EU 내 대기업, EU 내 상장 중소기업 및 EU 내에서 일정 매출액 조건 등을 충족하는 비(非)EU 지배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각 대상별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고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며, 대상 기업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이 마련하는 보고기준(ESRS)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CSRD」는 비(非)EU 지배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대상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포함되는 다른 기업의 정보 제공까지 요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ESRS」는 전 산업군에 적용되는 기준인 「Full ESRS」, 산업별 「ESRS」,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인 「LSME」,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표준인 「VSME」, 비(非)EU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NESRS」로 구분된다. 한편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CSRD」를 비롯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EU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크게 일부 대상 기업의 보고의무 시기(始期)를 2년씩 유예하는 「시행 일정 연기 지침」과 「CSRD」에 따른 보고 범위와 내용 등을 변경하는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으로 구성된다.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동 법안이 승인되면 적용 대상 기업 수 감소, 데이터포인트 축소로 인한 보고기준 완화, 산업별 「ESRS」철회, 합리적 검증 미도입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현행 「CSRD」가 어떻게 수정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으며, EU 내 종속기업을 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CSRD」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CSR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관련 국가의 입법 동향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대상이 확대·표준화되고 집행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비용 부담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CSRD」를 비롯한 글로벌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 및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 및 가치사슬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들 간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등을 활용하여 「CSRD」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적극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용어 : 「EU 지속가능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SG 공시, EU 옴니버스 패키지, 이중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성정보, 가치사슬정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목차

I. 서론

II. 「CSRD」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CSRD」의 구성 및 법 형식
2. 적용대상 및 요건
 - 1) 대상 기업의 확대
 - 2) 적용 대상별 이행 시기
3. 「CSRD」의 특징
 - 1)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도입
 - 2) 가치사슬 관련 정보 요구
 - 3) 제3자 검증
4. 보고방법
5.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

III. 「ESRS」 제정 현황 및 적용 요건

1. 「ESRS」의 도입
2. 보고서 게시 및 제출방법
3. 「Full ESRS」의 주요 내용
 - 1) 구성 및 일반원칙
 - 2) 공시요건(ESRS 2 ~ G1)
 - 3)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따른 개정 가능성
4. 산업별 보고기준
5.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LSME 및 VSME)
6. 비EU 기업을 위한 보고기준(NESRS)
 - 1) 제정 현황
 - 2) 주요 내용

IV.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CSRD」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우리에게 대한 영향 및 대응 전략
 - 1)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 (1) 우리 기업의 「CSRD」 적용 여부 확인
 - (2) 공시 비용 및 행정부담 증가
 - 2)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 (1) 대외적 전략
 - (2) 대내적 전략

V. 결론

I. 서론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지속가능보고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제정, 2023년 1

월 5일 발효되어 현재 EU의 입법으로 시행 중이다. 「CSRD」는 「유럽 텍소노미 규정(EU Taxonomy Regulation)」및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함께 EU의 지속가능금융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의 3대 주

요 입법 중 하나이다.¹⁾ 「CSRD」는 2014년 10월 제정된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을 비롯해,²⁾ 기업 경영 보고의무 및 감사요건 사항을 다루는 일련의 EU 지침 및 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EU 「CSRD」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이 크게 진전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정보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존 「NFRD」에 따른 ‘비재무정보’를 ‘지속가능성정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정보 공시를 위한 표준화된 보고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CSRD」는 「NFRD」이후 발전된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EU 내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비(非)EU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CSRD」는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의 핵심이며, 비재무정보 내지 지속가능정보의 공시에 관한 기준을 가장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룬 입법이라 할 수 있다.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지

속가능성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CSRD」 대상 기업의 범위는 기존 「NFRD」 보고의무 대상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보고의무 대상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에 따라 기업의 자체적 및 가치사슬에서 일어나는 행위 중 지속가능성 사안(sustainability matters)과 관련 있는 주요 영향(impact),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이하 통칭하여 ‘IRO’)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대상의 급격한 확대, 이중중대성 평가의 도입, 그리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등을 포함하는 「CSRD」는 도입 초기부터 시행 이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규제 완화 및 행정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와 피드백에 대응하고 유럽의 생산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³⁾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에 「CSRD」를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경제활동 분류체계(EU Taxonomy),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1)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후와 환경에 긍정적인 자원과 생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이다.

2)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Text with EEA relevance. 「NFRD」에 따라 EU 내 대상기업들은 2018년(2017 회계연도)부터 (i) 환경보호, (ii)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 대우, (iii) 인권보호, (iv) 부패 및 뇌물방지, (v) 이사회원의 다양성으로 구성된 총 5가지 분야에 관한 비재무정보를 자국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3)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제2문단(“In the context of the Commission’s commitment to reduce reporting burden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amend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hilst maintaining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가 그대로 채택될 경우, 연간 약 63억 유로의 기업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CSRD」 개정을 통한 비용 절감은 약 44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옴니버스 패키지에 관하여 발간한 Q&A(이하 ‘옴니버스 패키지 Q&A’) 제5면, 질의문답 9번 참조.

Mechanism)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EU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의도하였던 「CSR」 보고의무 대상 기업 수가 약 8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⁴⁾

「CSR」와 관련하여 옴니버스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개정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보고 일정과 관련하여, 일부 대상 기업의 보고의무 시기(始期)를 2년씩 유예한다.⁵⁾ 동 개정안은 2025년 4월 14일 EU 이사회 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이하 「시행 일정 연기 지침」).⁶⁾ 다음으로, 「CSR」에 따른 보고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개정안(이하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⁷⁾ 향후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따라 현행 「CSR」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자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을 먼저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보고 내용에 대한 개정 논의도 본격화하여 향후

「CSR」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CSR」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보고, 「CSR」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보고 및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ESRS」)에 관하여 유형별로 검토한다. 또한 「CSR」은 EU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비EU 지배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바, 「CSR」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한다.

II. 「CSR」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CSR」의 구성 및 법 형식

「CSR」은 84개조의 전문(前文)과 크게 8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며, 제1조부터 제4조

4) 옴니버스 패키지 Q&A 제3면, 질의문답 5번 참조.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Simplification Omnibus I and II(2025.02.2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api/files/document/print/en/qanda_25_615/QANDA_25_615_EN.pdf).

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06/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0 final 2025/0044 (COD).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0affa9a8-2ac5-46a9-98f8-19205bf61eb5_en?filename=COM_2025_80_EN.pdf

6) Directive (EU) 2025/79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April 2025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Text with EEA relevance). EU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제3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500794 참조.

7)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1 final 2025/0045 (COD)(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892fa84e-d027-439b-8527-72669cc42844_en?filename=COM_2025_81_EN.pdf). 참고로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이 채택되기 위한 다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EU 회원국의 55% (27개국 중 최소 15개국) 이상의 찬성표 및 (2)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찬성표(<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24/the-council-of-the-european-union>).

까지는 기존 EU의 지침 및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법제화(제5조), 검토 및 보고(제6조), 발효 및 시행(제7조) 및 대상국(제8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CSRD」에 의해 개정되는 기존 EU의 지침 또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CSRD」는 EU 회원국,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¹²⁾ 및 그 밖의 외국기업¹³⁾에 적용되는 공시 체계이며, 각 회

원국은 「CSRD」를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EU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Regulation)’과는 달리, 「CSRD」는 ‘지침(Directive)’ 형식의 입법이다. 따라서 「CSRD」의 회원국 내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각국의 개별 입법이 필요하고,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창설되는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¹⁴⁾

〈표 1〉 「CSRD」의 개정 대상 기존 입법

조항	개정 대상 EU 지침·규정	주요 내용
제1조	지침 2013/34/EU ⁸⁾	• 「NFRD」제정에 따라 기업영업보고서에 비재무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한 재무지침을 또다시 개정하여 지속가능성정보의 보고의무를 명시함
제2조	지침 2004/109/EC ⁹⁾	•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3국 기업의 보고기준에 대한 동등성 기준 등 EU 내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의 기업경영보고서 작성 요건 개정 및 지속가능성보고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 마련
제3조	지침 2006/43/EC ¹⁰⁾	• 지속가능성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 관련 사항 명시
제4조	규정 (EU) 537/2014 ¹¹⁾	• 지속가능성정보 보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8) Directive 2013/3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reports of certain types of undertakings, amending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Text with EEA relevance(이하 「Accounting Directive」).

9)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transparenc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formation about issuers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2001/34/EC.

10)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4/253/EEC(Text with EEA relevance)(이하 「Audit Directive」).

11) Regulation (EU) No 537/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statutory audit of public-interest entities and repealing Commission Decision 2005/909/EC(Text with EEA relevance).

12) EU 회원국은 아니나 EU법의 상당 부분을 유사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을 의미한다.

13) EU 내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비EU 지배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4)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2025. 3. 13. 기준 「CSRD」의 국내법 전환 미완료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 8개국이며, 전환 조치를 일부 이행한 국가는 벨기에, 체코 및 폴란드 3개국이다.

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financial-services-legislation/enforcement-and-infringements-banking-and-finance-law/monitoring-banking-and-finance-directives/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directive_en?prefLang=et. 참조.

2. 적용대상 및 요건

1) 대상 기업의 확대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기업의 수는 기존 「NFRD」의 적용 대상 기업 수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지속가능성정보 보고의무를 EU 내 기업에 한정하면 지속가능성 관행의 개선과 그린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하며,¹⁵⁾ 나아가 「CSRD」는 중소기업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EU 기업에게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RD」가 적용되는 기업은 크게 (i) 기존 「NFRD」적용 대상 기업, (ii) 대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 (iii) EU 내 상장된 중소기업 (다만 초소형 상장기업은 제외), (iv) EU 내 중요한 활동을 영위하는 비EU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또는 지점으로 분류된다. 한편 「CSRD」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대상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다른 기업(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참여자들)들도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형별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2〉 「CSRD」 적용 대상 기업 및 요건

유형	적용 요건
기존 「NFRD」 적용 기업	- EU 내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지정된 기업(public-interest entities) 중 평균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이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parent undertaking)**인 경우가 해당함. * 대기업(Large undertaking)¹⁶⁾: 다음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직원 250명 초과, ② 순매출¹⁷⁾ 5천만 유로 초과, ③ 자산총액 2천5백만 유로 초과¹⁸⁾ ** 대규모 기업집단(Large group)¹⁹⁾: 연결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으로써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말함 ① 직원 250명 초과, ② 순매출 5천만 유로 초과, ③ 자산총액 2천5백만 유로 초과²⁰⁾ • 대규모 기업집단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종속기업의 EU 내 소재 여부는 무관하므로,²¹⁾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소재와 상관없이 그의 임직원 수·순매출·자산총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5) 「CSRD」 전문, 6면 20번째 문단.

16) 「NFRD」에 따라 개정된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17) 「Accounting Directive」에 의하면 순매출(net turnover)은 'amounts derived from the sale of product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after deducting sales rebates and value added tax and other taxes directly linked to turnover'를 의미한다.

18) 초소형, 중소기업, 대기업 및 기업집단의 기업 규모에 대한 2023.10.17.자 발표된 하위지침(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제3조 제4항.

19) 「NFRD」에 따라 개정된 「Accounting Directive」 제29a조.

20) 초소형, 중소기업, 대기업 및 기업집단의 기업 규모에 대한 2023.10.17.자 발표된 하위지침(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제3조 제7항.

21) 「Accounting Directive」 제2조 제10항.

유형	적용 요건
대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	• 기존 「NFRD」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기업도 「CSRD」적용 대상임.²²⁾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요건은 위와 동일함.
EU 내 상장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위 대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초소형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²³⁾ • 초소형 기업(micro-undertaking)은 ① 직원 수 10명 이하, ② 순매출 90만 유로 이하, ③ 자산총액 45만 유로 이하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임.²⁴⁾
EU 내에서 중요한 활동을 영위하는 비EU 지배기업 및 그 종속회사·지점	• 일정 매출액(조건 1 및 2)을 초과하는 비EU 지배기업(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의 매출 포함)은 비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지속가능성정보 보고서를 게시(공개)할 의무를 부담.²⁵⁾ (조건 1) 지난 2년간 EU 내 발생 총 순매출액이 연간 1억 5천만 유로 초과일 것 (조건 2) ① EU 내 「CSRD」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종속기업을 두거나, 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4천만 유로 초과하는 순매출액이 발생하는 EU 내 지점이 있는 경우²⁶⁾ • EU 내 종속기업의 비EU 지배기업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종속기업은 제19a조 또는 제29a조에 따른 「CSRD」공시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40a조에 따라 비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전체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발표된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서는 대상기업의 범주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추후 동 법안이 그대로 채택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보고의무 대상 기

업의 약 80%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에서 제시된 보고의무의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22)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1항 및 제29a조 제1항.

23)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1항.

24) 초소형, 중소기업, 대기업 및 기업집단의 기업 규모에 대한 2023.10.17. 발표된 하위지침(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제3조 제1항.

25) 여기서 관련 매출액은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재무보고 체계에 의해 또는 그 의미 내에서 정의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Accounting Directive」 제2조 제5항).

26) 「Accounting Directive」 제40a조 제1항.

〈표 3〉「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따른 대상 기업 및 요건

분류	개정안 ²⁷⁾
기존 「NFRD」 적용 기업	연간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인 기업 중 (가) 순매출 5천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나) 자산 총액이 2천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
대기업	
상장된 중소기업	보고의무 삭제
EU 내에서 중요한 활동을 영위하는 비EU 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지점	- 일정 매출액(조건 1 및 2)을 초과하는 비EU 지배기업(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의 매출 포함) (조건 1) 지난 2년간 EU 내 발생 총 매출액이 연간 4억 5천만 유로 초과일 것 (조건 2) ① 기존 대기업의 정의규정에 해당(직원 250명* 초과, 순매출 5천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 2천5백만 유로 초과 중 2가지를 충족)하는 EU 내 종속기업을 두거나, 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5천만 유로 초과하는 순매출액이 발생하는 EU 내 지점이 있는 경우 *비EU 지배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초과 기준 미적용

「CSRD」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회원국은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바, 따라서 각 회원국이 「CSRD」의 국내법 전환을 통해 적용 대상을 달리 정하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적용대상별 이행 시기

EU 집행위원회는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단

계별로 이행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1차적으로 기존 「NFRD」 공시 대상기업은 올해인 2025년부터 2024 회계연도 기준 영업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그리고 비EU 기업에게 「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기술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의 최종 도입에 따라 변경된 대상 기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4〉「CSRD」 대상 기업별 적용 시기²⁸⁾

적용 시기	적용 대상	근거 조항
'25년 (FY24)부터	기존「NFRD」적용 대상	제19a조 및 제29a조
'28년 ²⁹⁾ (FY27)부터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	제19a조 및 제29a조
'29년 ³⁰⁾ (FY28)부터	상장 중소기업	제19a조 단, 19a(7)조에 따라 2년 유예
'29년 (FY28)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EU 지배기업	제40a조

27)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28) 「시행 일정 연기 지침」 제1조.

29) 변경 전에는 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30) 변경 전에는 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EU 소재 종속 기업이 있는 비EU 기업은 당초 2026년(2025 회계연도)부터 「CSRD」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의 도입에 따라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비EU 지배기업은 최소 향후 2년간 「CSRD」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고할 부분이기도 하다.³¹⁾

3. 「CSRD」의 특징

1)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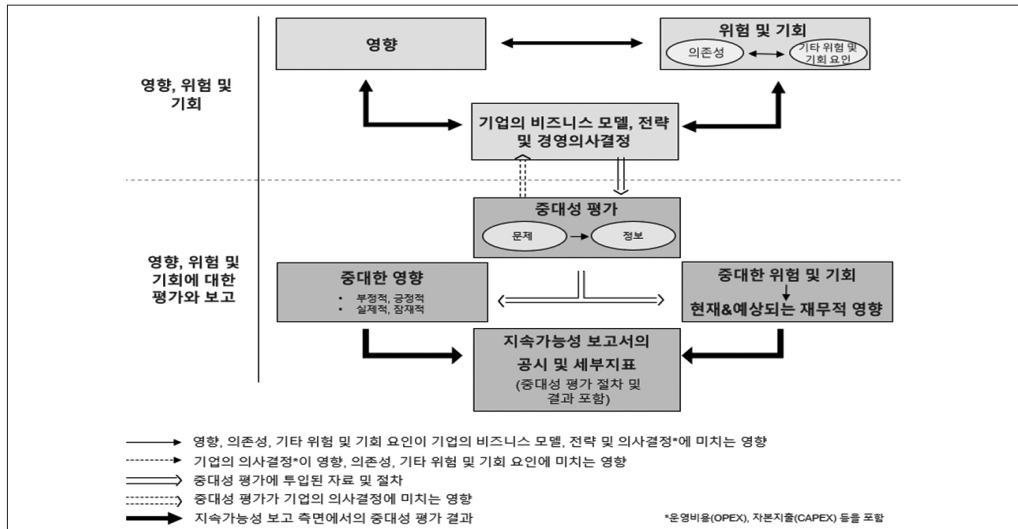
「CSRD」에서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 및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을 모두 도입하여, 중대성의 개념을 양방향으로 확장하여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 등 지속가능성 사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공시하도록 체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³²⁾

먼저 영향 중대성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³³⁾ 재무적 중대성이란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 전망(기업 성장,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의 흐름, 자금 조달 접근성, 자본비용 등)에 미치는 주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³⁴⁾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은 모든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여 중요 IRO(impact, risk, and opportunity)가 식별되는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아래 표에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³⁵⁾

〈표 5〉 중대성 평가 관련 요소 관계도



31) 참고로 한국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삼일 회계법인,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2023.9), 4면 참조.

32)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33) 「ESRS Regulation」 270면.

34) 「ESRS Regulation」 267면.

35) 아래 도표는 EFRAG, “EFRAG IG1: Materiality Assessment”, Implementation Guidance, 2024, 12면에서 발췌한 것이다.

2) 가치사슬 관련 정보 요구

「CSRD」에서는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IRO³⁶⁾에 더해, 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중요 IRO에 관한 정보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한다.³⁷⁾

다만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치사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i) 산업별 데이터 등의 간접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추정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ii) 가치사슬 정보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³⁸⁾

「CSRD」는 보고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이 가치사슬 내 제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 또한 고려하여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CSRD」 보고의무가 없는 가치사슬 내 행위자(예를 들어 비상장 중소기업)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상장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보고기준(LSME)³⁹⁾의 범위, 즉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을 초과하여 정보를 요구하지는 못하도록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⁴⁰⁾

최근 발표된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가치사슬 상한의 적용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동 법안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가치사슬 내에 있는 「CSRD」 미적용 기업에 대해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보고기준(VSME)⁴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⁴²⁾ 이는 가치사슬 정보 제공 및 수집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보다 실효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해 과도한 정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법안은 직원 수 1,00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해 「CSRD」 적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현재 EFRAG에서 발표한 「VSME」는 직원 수 250명 이하 등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기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표준 설정 및 입법 논의 과정에서 「VSME」 기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3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체적 및 가치사슬에서 일어나는 행위 중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 있는 주요 영향(impact),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를 의미한다.

37)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3항. 연결기준 보고 대상자들 또한 제29a조 제3항에 따라 가치사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38)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3항.

39)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ESRS for Listed SMEs)을 의미하며, 상세는 후술하기로 한다.

40) 「Accounting Directive」 제29b조 제4항.

41)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Voluntary ESRS for Non-listed SMEs)을 의미하며, 상세는 후술하기로 한다.

42)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3) 제3자 검증

「CSRD」에서는 제3자 검증(assurance)을 의무화하여 대상 기업들이 공시한 내용의 투명성, 신뢰성 및 정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⁴³⁾ 초기에는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으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로 강화되며,⁴⁴⁾ 이와 같은 검증은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검증기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한적 검증의 구체적 기준 및 과정을 명시하는 하위 법령은 2026년 10월초까지, 합리적 검증의 구체적 기준 및 과정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은 2028년 10월초까지 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⁴⁵⁾ EU 집행위원회가 검증기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각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검증기준, 과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검증 제도는 대상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서 검증 요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2026년까지 제한적 검증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는 하위 법령 채택 의무를 무기한 연장하되 2026년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검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하고,⁴⁶⁾ 둘째, EU 집행위원회가 합리적 검증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며,⁴⁷⁾ 셋째, 검증인이 기업의 가치사슬 내 연간 평균 근로자 수 1,000명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중소기업 표준⁴⁸⁾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⁴⁹⁾

EU 집행위원회는 검증 표준에 관한 하위 법령 대신 가이드라인을 발행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검증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한적 검증에서 강화된 합리적 검증 제도는 도입되지 않는 결과로 되는바, 이는 「CSRD」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정보 보고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43) 「Accounting Directive」는 제34조 제1항 (aa)호.

44) 「Audit Directive」 제26a조 제1항. 제한적 검증과 합리적 검증 사이에는 검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제한적 검증은 “중대한 허위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 등의 부정적 표현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반면에, 합리적 검증은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측정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검증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합리적 검증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Auditing Oversight Bodies)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제한적 검증 가이드라인 제2-3면(https://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8ac2df18-2ae1-4bc7-9d87-a4a740e48f5e_en?filename=240930-ceaob-guidelines-limited-assurance-sustainability-reporting_en.pdf&prefLang=ro.) 참조.

45) 「Audit Directive」 제26a조 제3항.

46)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제3문단 및 법안 제1조.

47)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제4문단 및 법안 제1조.

48)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표준(Voluntary ESRS for Non-listed SMEs)을 의미하며 상세는 후술하기로 한다.

49)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제9문단 및 법안 제2조.

50)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4-5면 참조.

4. 보고방법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제19a조항에 따른 개별 보고(individual reporting), 제29a조항에 따른 연결 보고(consolidated reporting) 및 제48i조항에 따라 비(非)EU 지배기업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EU 최대 자회사 연결 보고(artificial consolidation reporting)를 의미한다.

개별 보고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CSRD」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속가능성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이며, 연결보고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이 기업집단 내

모든 기업 주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 사안에 미치는 영향 및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집단의 성장, 퍼포먼스 및 지위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방식을 말한다.⁵¹⁾ EU 최대 자회사 연결 보고 방식은 과거 5년 이내에 EU 내 자회사 중 최대 매출액을 단 한 번이라도 기록한 자회사가 제19a조 및 제29a조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EU 내 모든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2030. 1.까지만 활용 가능한 한시적인 방식이다.⁵²⁾

각 보고방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보고방법과 장·단점 비교

보고방법	적용 대상	장점	단점
개별 보고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 각 대상 기업이 자신의 지속가능성정보만 보고하면 족하므로 타 종속기업과의 협의가 불요하여 효율적일 수 있음	• 기업집단 내 「CSRD」대상 기업이 다수인 경우 개별 보고를 위하여 수반되는 부가적 비용(제3자 검증 확보 등) 증가 • 지배기업과 타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간 정보 불일치 리스크 증가
연결 보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기업	• 1개 보고서에 종속기업(면제 제외 제외)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다뤄짐에 따라 정보의 불일치 리스크가 낮음 • 1개의 보고서 작성으로 인하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부가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러 종속기업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 수집·관리·감독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 「CSRD」대상 외 종속기업 또한 지배기업에게 지속가능성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됨
EU 최대 자회사 연결 보고	제19a조 또는 제29a조에 따른 공시의무 대상 중 비EU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동시에 최근 5년 내 모든 EU 종속기업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한 종속기업	• 1개 보고서에 EU 내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다뤄짐에 따라 정보의 불일치 리스크가 다소 낮음 • 1개 보고서 작성으로 인하여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배기업의 비EU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제한 가능	•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배기업의 EU 내 종속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 • '30년도까지만 허용되는 한시적인 보고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체의 연결 보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감독 절차 내재화 필요

51) 「Accounting Directive」 제29a조 제1항.

52) 「Accounting Directive」 제48i조 제1항.

5.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

지배기업이 연결 보고 방식을 통하여 지속 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 제19a조 또는 제29a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종속기업은 아래 표에서 기술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면제된다.⁵³⁾ 보고면제에 관한 사항은 비(非)EU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둔 종속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⁵⁴⁾

〈표 7〉 보고면제 요건

구분	내용
연결보고 기준 보고를 하는 지배기업에 관한 요건 ⁵⁵⁾	• 연결보고서에 종속기업들을 포함할 것 • (지배기업이 비EU 기업인 경우) 연결보고서와 이에 대한 검증 의견은 종속기업이 「Accounting Directive」 제30조에 따라 게시하고 EU 각 회원국의 법적 요건 (예. 번역본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족할 것
보고를 면제받고자 하는 종속기업에 관한 요건	• 상장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⁵⁶⁾ • 지배기업의 연결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할 것: ✓ 연결보고 작성·제출하는 지배기업의 상호와 등록된 사무소 ✓ 지배그룹의 연결 영업보고서 또는 연결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이에 대한 검증 의견에 대한 접속 링크 ✓ 종속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면제 관련 사항

※ 출처 :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9항

참고로 비(非)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연결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바,⁵⁷⁾ 해당 보고기준은 일반 보고기준에 비해 완화된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EU 내 종속기업으로서는 위와 같이 완화된 보고기준으로 본래의 보고의무를 충족하

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연결보고를 제공함으로써 EU 소재 종속기업의 보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비(非)EU 지배기업은 별도의 완화된 보고기준이 아닌 일반 보고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53)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9항.

54)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9항.

55) 「Accounting Directive」 제29a조 제4항.

56)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10항 및 제29a조 제9항.

57) 「Accounting Directive」 제40b조.

58) 「CSRD」 FAQ(안) 질의 #48 참조.

III. 「ESRS」 제정 현황 및 적용 요건

1. 「ESRS」의 도입

「CSRD」는 지속가능성정보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고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게 「CSRD」을 위한 보고기준 체계를 정립할 권한을 위임하였다.⁵⁹⁾ EFRAG는 현재 「CSRD」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각 대상 기업군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사(또는 기업집단)와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영향, 위험 및 기회의 공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ESRS」를 연구·개발하는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SRD」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지침인 반면, 「ESRS」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들은 모두 각 해당하는 「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존 「NFRD」하에서는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하거나 실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CSRD」는 대상 기업의 유형별로 「ESRS」를 마련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8〉 「ESRS」 유형 및 입법 현황

적용 시기	특징	현황
일반 공시대상 (제19a조 및 제29a조)	전 산업군에 적용되는 보고기준 (Sector-agnostic ESRS, 이하 「Full ESRS」)	'23.7. 도입 ⁶⁰⁾
	산업별 보고기준 ⁶¹⁾ (Sector-specific ESRS, 이하 「산업별 ESRS」)	개발 중
중소기업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 (ESRS for Listed SMEs, 이하 「LSME」)	보류 ⁶²⁾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표준 (Voluntary ESRS for Non-listed SMEs, 이하 「VSME」)	'24.12. 발표 ⁶³⁾
비EU 기업	비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차원 연결 보고를 위한 기준 ⁶⁴⁾ (Non-eu ESRS, 이하 「NESRS」)	보류 ⁶⁵⁾

59) EFRAG는 기존 유럽 내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보고 표준화를 지원하였던 기구이다. 유럽의 ESG 공시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EFRAG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EFRAG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서는 EFRAG 공식 웹사이트(<https://efrag-website.azurewebsites.net/About/Governance/40/EFRAG-Sustainability-Reporting-Board>) 참조.

60) 「Full ESRS」는 2023년 중순에 도입되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6면 참조.

61)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위험 및 영향의 규모는 각 산업 부문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각 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영향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별 「ESRS」를 마련하고 있다. 「Accounting Directive」 제29b조 제1항.

62) 최근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이다.

63) 향후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채택 여부에 따라 「VSME」의 내용은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64) 「Accounting Directive」 제29b조 제1항 및 제40b조.

65) 최근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서는 「ESRS」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서는 산업별 「ESRS」 및 「LSME」의 도입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래 EU 집행위원회는 「CSRD」 제29b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산업별 「ESRS」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동 법안에서는 보고 데이터 포인트 증가 방지를 위해⁶⁶⁾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별 「ESRS」채택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⁷⁾ 또한 해당 법안에서 상장 중소기업을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 보고기준인 「LSME」에 관한 「CSRD」 제29c조를 전면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⁶⁸⁾

다음으로 동 법안에서는 「CSRD」 미적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하위 법령을 통해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로 「VSME」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⁶⁹⁾ 참고로 EFRAG는 2024년 12월 17일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희망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VSME」를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는

데,⁷⁰⁾ 이는 보고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가치사슬 내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동 법안에서는 「VSME」에 제시된 가치사슬 상한선의 적용을 명시하는 바, 추후 동 법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VSME」을 하위 법령으로 채택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⁷¹⁾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개된 「VSME」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Full ESRS」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⁷²⁾ 실제로 「Full ESRS」가 개정될 경우 보고의무 대상 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이중 중대성 원칙 적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⁷³⁾

향후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이 채택되어 실제 입법화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Full 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를 완료하거나 준비 중인 대상 기업들은 보고 전략과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내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⁴⁾

66)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13번째 문단.

67)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68)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69) 현행 「CSRD」에서는 「Full ESRS」, 「LSME」 및 「NESRS」의 도입에 관해서만 근거를 두고 있다.

70) “EFRAG,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 발표”(https://www.efrag.org/en/news-and-calendar/news/efrag-releases-the-voluntary-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for-nonlisted-smes) 참조.

71)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72)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6면 참조.

73)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6면 참조.

74)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FRAG는 2025년 3월 「Full ESRS」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다가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ttps://widgixeu-library.s3.amazonaws.com/library/90007349/ESRSSet1revisionQuestionnaireforpublicfeedback.pdf 참조. EFRAG는 EU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Full ESRS 개정안 준비 작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FRAG의 구체적인 개정 작업 계획은 EFRAG의 ESRS revision: work plan(https://www.efrag.org/system/files/sites/webpublishing/Meeting%20Documents/2504100746343948/ESRS%20simplification%20Workplan%20SRB%20250410%20clean.pdf) 참조.

2. 보고서 게시 및 제출방법

「CSRD」의 적용 대상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게시·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영업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공개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는데,⁷⁵⁾ 지속가능성정보를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가 아닌 영업보고서 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대상 기업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대차대조표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준비 및 게시되어야 한다.⁷⁶⁾ 특히, 「Full ESRS」 적용 대상 기업 또는 기업집단은 유럽 단일 전자 형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에 대한 기준⁷⁷⁾에 따라, 지속가능성정보를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⁷⁸⁾ 또한, 비(非)EU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또는 지점이 지속가능성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정보를 대차대조표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⁷⁹⁾

보고서 작성 및 게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 등 비(非)EU 지배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언어에 관한 사항 또한 유의하여

야 한다. 즉, EU 내 종속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자 연결기준으로 지속가능성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 면제 대상 기업이 위치한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영업보고서는 관할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⁸⁰⁾ 또한 EU 내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종속기업 또는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EU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⁸¹⁾

위와 같은 요건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개를 표준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SRD」에서는 앞서 언급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非)EU 지배기업이 글로벌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비(非)EU 지배기업이 직접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⁸²⁾ 비(非)EU 지배기업이 직접 연결기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EU 내 종속기업·지점이 게시하는 경우, EU 내 종속기업·지점이 비(非)EU 지배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연결기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방식은 향후 입법 내지 실무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5) 「Accounting Directive」 제29d조..

76) 「Accounting Directive」 제30조.

77)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815 of 17 December 2018 supplementing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the specification of a single electronic reporting format (Text with EEA relevance).

78) 「Accounting Directive」 제29d조..

79) 「Accounting Directive」 제40d조.

80)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및 제29a조.

81) 「Accounting Directive」 제40d조.

82) 「CSRD」 FAQ(안) 질의 #42 참조.

EU 내 종속기업·지점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각 종속기업·지점이 작성된 보고서를 각기 제시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는바,⁸³⁾ 이에 관하여는 「CSRD」를 전환한 각 회원국의 국내 법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Full ESRS」의 주요 내용

1) 구성 및 일반원칙

「Full ESRS」는 2022년 8월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2023년 7월 최종 도입되었다. 이는 「CSRD」 제19a조 및 제29a조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대상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며, 2개의 공통기준과 10개의 주제별 기준, 총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다.

ESRS 1(General Requirements)은 「ESRS」

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적용되는 규범과 핵심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원칙이다. 여기서는 「CSRD」가 제시하는 작성 규범(관련성, 충실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⁸⁴⁾ 지속가능성 사안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중요 IRO의 식별을 위하여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고 가치사슬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대상 기업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지속가능성 사안은 크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중요 IRO를 식별한 후 「ESRS」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⁸⁵⁾ 다만 「ESRS」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지속가능성 사안은 현재 완결된 목록은 아니며, 이 외에 각 기업의 특징 및 산업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⁶⁾

〈표 9〉 「Full ESRS」 구성

공통 기준		ESRS 1	일반 원칙
		ESRS 2	일반 요구사항
주제별 기준	환경	ESRS E1	환경 변화
		ESRS E2	환경 오염
		ESRS E3	물 및 해양자원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사회	ESRS S1	임직원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ESRS S3	지역사회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지배구조	ESRS G1	비즈니스 활동 (기업문화·윤리, 부패방지, 공급망 관계 유지 등)

83) 「CSRD」 FAQ(안) 질의 #43 참조.

84) 「ESRS Regulation」, 30-32면.

85) 「ESRS Regulation」, 5면 두 번째 문단. 지속가능성 사안의 상세는 「ESRS Regulation」, 27-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86) 「ESRS Regulation」 26면 AR. 16.

2) 공시요건(ESRS 2 ~ G1)

「ESRS」 2는 모든 공시 대상 기업 지속 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일반 요건 사항을 다룬다. 이는 크게 거버넌스(governance), 비즈니스 전략 및 사업모델(strategy and business model, 이하 ‘SBM’),

IRO(impact, risk, and opportunity) 관리, 지표와 목표(metrics and targets, 이하 ‘MT’)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⁸⁷⁾

이와 같은 일반 공시요건에 더해, 대상 기업은 중요성이 식별되는 각 주제(환경, 사회, 지배구조)별 공시요건을 갖추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⁸⁸⁾

〈표 10〉 ESRS 2 일반공시 요구사항

작성 근거	• BP-1: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 근거 • BP-2: 특정 상황 관련 공시
거버넌스	• 공개 요구사항 GOV-1: 행정,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 • 공개 요구사항 GOV-2: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지속가능성 문제 • 공개 요구사항 GOV-3: 인센티브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 • 공개 요구사항 GOV-4: 실사에 대한 설명 • 공개 요구사항 GOV-5: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SBM	• 공개 요구사항 SBM-1: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 • 공개 요구사항 SBM-2: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견해 • 공개 요구사항 SBM-3: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과의 상호 작용
IRO	•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공개] • 공개 요구사항 IRO-1: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 공개 요구사항 IRO-2: 기업의 지속가능성 선언문에서 다루는 「ESRS」의 공개 요구사항
MT	• 아래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최소 공개 요구사항 참고
최소 공개 요구사항	• [정책] 최소 공개 요구사항 MDR-P: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 • [조치] 최소 공개 요구사항 MDR-A: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조치 및 자원 • [지표] 최소 공개 요구사항 MDR-M: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지표 • [목표] 최소 공개 요구사항 MDR-T: 목표를 통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

87) 「ESRS Regulation」, 40면.

88) 각 공시요건에 관하여 상세하게는 「ESRS Regulation」, 33-34면 및 72-163면(환경 부문 공시요건), 34-35면 및 164-245면(사회 부문 공시요건), 246-251면(지배구조 부문 공시요건) 참조.

3)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따른 개정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Full ESRS」 기준 자체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로 인한 보고 항목 축소 등이 예상된다.⁸⁹⁾ 구체적으로는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보고 항목은 삭제 또는 자율 보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서술형(narrative) 형식보다는 정량적(quantitative) 데이터포인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Full ESRS」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⁹⁰⁾

4. 산업별 보고기준

「CSRD」는 산업별로 지속가능성정보와 관련한 환경적·사회적 영향과 그 측정 방법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 공시 대상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공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였다.⁹¹⁾ 이에 따라 EFRAG는 총 15개의 산업 그룹과 35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안을 발표하였고, 각 산업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⁹²⁾

〈표 11〉 EFRAG의 산업 부문 분류

순번	산업 부문	세부 산업
1	농업	농림어업
		임업 및 목재 제품
2	건설	건설 및 엔지니어링
3	유틸리티	에너지 및 유틸리티
		수자원 및 폐기물 서비스
4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5	금융기관	자본시장
		신용기관
		보험
6	헬스케어	헬스케어 및 서비스
7	환대 산업	숙박
		음식료
8	가정용 상품	기타 가정용품
9	제조	항공우주, 방위 및 서비스
		바이오에너지
		화학 및 폴리머
		건설 자재
		전자 및 전기 장비
		식품 및 음료
		기계 및 장비
		의료 기기
		금속 가공
		자동차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

89)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6면 참조.

90)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Explanatory Memorandum 제6면 참조.

91) 「Accounting Directive」 제29b조 제1항.

92) 산업별 보고기준에 대한 개요 및 제정 현황 등에 관하여는 EFRAG 웹사이트(<https://www.efrag.org/en/sustainability-reporting/ESRS-workstreams/sectorspecific-ESRS>) 참조.

10	광업	석탄, 채석장 및 광업
		석유 및 가스
11	부동산	부동산
12	판매 및 무역	판매 및 무역
13	서비스	교육
		전문 서비스
14	기술	정보 기술
		미디어·통신
15	운송	기타 운송
		도로 운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SRD」 제29b조 제 1항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까지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산업별 위험 및 영향을 고려한 산업별 「ESRS」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에서는 보고 데이터 포인트 증가 방지를 위해⁹³⁾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별 「ESRS」 채택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⁹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중소기업을 위한 보고기준(LSME 및 VSME)

「CSRD」에서는 개별보고 형태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EU 내 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요건 및 간소화된 공시기준(LSME)을 정하고 있다.⁹⁵⁾ 이에 따르면 EU 내 상장 중소기업은 (i)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에 대한 간략한 설명, (ii)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에 대한 설명, (iii)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기업의 주요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 및 그러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감시, 방지, 완화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iv)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요 위험 및 기업이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및 (v) 위 (i)호부터 (iv)호에 언급된 공개에 필요한 주요 지표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LSME 개발과 관련하여, 그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 및 이를 반영한 수정 작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LSME(안)은 지속가능성정보 보고기준 초안 마련을 담당하는 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Technical Expert Group(SR TEG)의 내부 절차를 거쳐, EFRAG 내에서 지속가능성정보 보고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이하 'EFRAG SRB')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에서 상장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 「LSME」 의무사항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LSME(안)은 EFRAG SRB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⁹⁶⁾

93)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전문 13번째 문단 참조.

94)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95) 「Accounting Directive」 제19a조 제6항.

96) EFRAG 웹사이트(<https://www.efrag.org/en/projects/ESRS-LSME-ESRS-for-listed-smes/concluded>) 참조.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CSRD」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가치사슬 정보의 일환으로 향후 비상장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 지속가능성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EFRAG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초소형 기업이 지속가능성정보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의 자발적 지속가능성 체계 참여를 돕기 위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VSME)을 개발하였고 이는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⁹⁷⁾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VSME」는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VSME」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가치사슬 상한 등 관련 기준은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⁹⁸⁾ 따라서 우리 기업은 추후 「VSME」의 변경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비(非)EU 기업을 위한 보고기준(NESRS)

1) 제정 현황

「CSRD」의 적용 대상 기업 중 비(非)EU 지배기

업에 대해서는 역외적용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보고의무가 인정된다.⁹⁹⁾ 「CSRD」 제40a조 제1항은 「CSRD」에 따른 글로벌 연결기준 지속가능성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비(非)EU 지배기업에 대하여, “제29a조 제2항 제a호 (iii)목부터 (v)목까지, 제b호부터 제f호까지,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h호에 명시된 사항”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非)EU 지배기업은 제29a조에서 나열된 공시사항 중 (i)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기업집단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의 탄력성,¹⁰⁰⁾ (ii)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기업집단이 마주하는 기회,¹⁰¹⁾ (iii)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기업집단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해당 문제에 대한 기업집단의 주요 의존성 및 해당 리스크의 관리 방법 포함)¹⁰²⁾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재무적 중대성 평가의 핵심인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제외한 것이어서, 제40a조에 따른 비(非)EU 지배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영향 중대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FRAG는 본래 2024년 12월 중 「NESRS」 초안을 마련 후 2025년 1월 중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하여 초안을 발표하고 2025년 말까지 「NESRS」1차 최종 초안을 준비하는 일정을 목표

97) 「ESRS」 도입 관련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2023.7.31.자 질의응답 참조. 비상장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은 EU 기업 중 약 99%를 차지하는 등 유럽 사회 및 경제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관련 유럽의회 및 이사회 등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2023.9.12.자 발표자료(SME Relief Package) 2면(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document/download/8b64cc33-b9d9-4a73-b470-8fae8a59dba5_en?filename=COM_2023_535_1_EN_ACT_part1_v12.pdf) 참조.

98)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제2조.

99) 「Accounting Directive」 제40a조 및 제40b조.

100) 제29a조 제(2)항 제(a)호 (i)목.

101) 제29a조 제(2)항 제(a)호 (ii)목.

102) 제29a조 제(2)항 제(g)호.

로 하였다.¹⁰³⁾ 하지만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2025년 1월 15일 EFRAG SRB 회의에서는 「NESRS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되었던 초안」(Exposure Draft, 이하 「NESRSED」)에 대한 결의를 보류하였다.¹⁰⁴⁾ 다만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EFRAG SRB 의장은 위원들에게 현재 초안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초안의 기술적 내용 자체는 내부적으로 승인된 상태라고 한다. 향후에는 「NESRS」 ED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작업이 남아 있으며,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¹⁰⁵⁾ 「CSRD」에 의하면 「NESRS」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최종 제정되어야 한다.¹⁰⁶⁾

2) 주요 내용

현재까지 마련된 「NESRSED」을 보면, 「Full ESRS」과 유사하게 일반 기준 및 10개의 주제별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보고기준 및 보고 대상 정보는 대폭 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⁷⁾ 2025년 2월 기준 EFRAG SRB에서 승인된 「NESRSED」¹⁰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향 중대성 평가와 관련하여, 비EU 지배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적 중대성 평가를 위한 사항의 공시가 제외됨으로써 이중 중대성 평가가 아닌 영향 중대성 평가만이 요구된다.¹⁰⁹⁾ 다만 재무적 위험과 기회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¹¹⁰⁾

다음으로 대상 기업에게 공시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NESRSED」에 의하면, 대상 기업은 환경변화(NESRSE1)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주제별 공시에 대하여 당해 기업 및 가치사슬 내에 있는 기업¹¹¹⁾이 EU 시장 내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에 관한 주요 영향에 한

103) EFRAG 활동에 대한 2024년 10월호 업데이트 26면(<https://www.efrag.org/sites/default/files/sites/webpublishing/SiteAssets/EFRAG%20Update%20October%202024.pdf>) 참조.

104) NESRS에 대한 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한 EFRAG 웹사이트(<https://www.efrag.org/en/projects/noneu-groups-standard-setting/research-phase>) 참조.

105) NESRS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에 대한 EFRAG 웹사이트(<https://www.efrag.org/en/projects/noneu-groups-standard-setting/research-phase>) 참조.

106) 「Accounting Directive」 제40b조.

107) 다만 이는 보고 대상 정보가 완화된 것이며 「Full ESRS」에 따라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이 일반 공시요건에 더하여 주제별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40a조에 따른 대상 기업은 「NESRS」에 따른 일반 공시요건에 더해 각 주제(환경, 사회, 지배구조)별 공시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08) EFRAG 웹사이트(<https://www.efrag.org/system/files/sites/webpublishing/Meeting%20Documents/2411071010244152/06-02.1%20NESRS%20ED%20SRB%20250226.pdf>) 참조.

109) EFRAG 활동에 대한 2024년 10월호 업데이트 23면(<https://www.efrag.org/sites/default/files/sites/webpublishing/SiteAssets/EFRAG%20Update%20October%202024.pdf>) 참조. 한편 EFRAG SRB에서 내부 승인된 「Full ESRS」와 「NESRS」에 대한 비교문서에서 "Double Materiality"가 "Impact Materiality"로 수정, "risk", "opportunity", 및 "financial materiality"은 모두 삭제된 것이 확인됨. 2025.02.26.자 NESRSED 웹사이트(<https://www.efrag.org/system/files/sites/webpublishing/Meeting%20Documents/2411071010244152/06-02.2%20NESRS%20ED%20compared%20to%20delegated%20act%20SRB%20250226.pdf>) 참조.

110) NESRSED 10면 38A 문단.

111) 당초 EFRAG는 가치사슬 내 참여자의 소재지가 EU 외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24.11.18.자 초안 11면 62A 문단 참조.

하여 공시할 수 있다.¹¹²⁾ 이와 같은 선택권은 글로벌 기업 활동에 대하여 연결기준의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비EU 지배기업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비EU 지배기업이 위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이에 관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¹¹³⁾

IV.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CSRD」에 대한 평가와 전망

EU는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인 「NFRD」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정보를 동등화하고 공시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형태의 「CSRD」를 도입하였다. 「CSRD」와 「ESRS」는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이중 중대성 기준과 제3자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의 공시기준이며, 공개되는 정보이용자의 범위가 재무적 투자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CSRD」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시행되나, 「ESRS」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CSRD」와 「ESRS」는 다른 ESG 공시제도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나 IFRS의 ISSB 기준과 비교할 때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수준의 규제라 평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옵니버스 패키지에 의해 향후 규제 내용이 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공시기준 간의 유사성 내지 상호운용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2월 26일 발표된 옵니버스 패키지가 향후 최종 입법되는 경우 현행 「CSRD」에 대하여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NFRD」 적용 기업 및 EU 내 대기업 중 평균 임직원수 1,000명 이하인 기업, 상장 중소기업은 「CSRD」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비EU 기업의 경우에도 EU 내 발생한 순매출액 요건이 연간 1억 5천만 유로 초과에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된다. 한편 EU 내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의 보고시기가 각 2년씩 유예되고, 산업별 「ESRS」 채택이 철회될 수 있으며, 제한적 검증에 비해 엄격한 기준인 합리적 검증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보고대상 기업수에 비해 8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공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옵니버스 패키지에서는 「ESRS」와 IFRS S1 및 S2 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개정 방향을 밝히고 있어 향후 ISSB 기준이 글로벌 공시기준으로써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¹¹⁴⁾

다만 옵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규제 간소화 방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EU 내에서 진행될 입법 프로세스에 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12) NESRSED 6면 18B 문단.

113) 2025.02.26.자 NESRSED 7면 18B 문단.

114) EU 옵니버스 계획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회의안건(2025. 3. 20.), 10면 참조.

2. 우리에게 대한 영향 및 대응 전략

1)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1) 우리 기업의 「CSRD」 적용 여부 확인

「CSRD」는 비EU 지배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특히 EU 내 종속기업을 둔 우리 기업은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상 기업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와 보고시기가 상이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EU 자본시장에 채권이나 주식을 상장한 기업인지, EU 소재 종속기업이 EU 내 대기업에 해당하는지, EU 소재 종속기업·지점의 EU 역내 매출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CSRD」의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살펴야 할 것이다.¹¹⁵⁾ 현행 「CSRD」에 의하면, 비EU 지배기업의 경우 EU 내 총매출액(기업집단 연결 기준)이 연간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EU 내 종속기업이 대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이거나 EU 내 종속기업·지점의 총매출액이 4천만 유로 초과하면, 해당 지배기업은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029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들은 「CSRD」를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별 입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EU 국가의 「CSRD」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공시 비용 및 행정부담 증가

공시대상이 확대·표준화되고 집행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비용 부담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SRD」에 따른 공시 방법 중 연결 보고 및 EU 최대 자회사 연결 보고 방식의 경우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정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지배기업 내에서 EU 소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각국 소재 종속기업으로부터 지속가능성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감독 관련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상 기업은 전체 공급망 내 정보를 담아야 하기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직·간접적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IRO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SRD」는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상 기업은 중요한 평가항목 및 주제 선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평가항목 등 선정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CSRD」가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제3자 검증 기준을 준수하는 것 역시 대상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CSRD」에 따른 공시 결과 기업의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

115) 2024년 상반기 기준 EU 내에 종속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약 75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KPMG, Global CSRD Scoping Webcast(2024. 7), 6면 참조.

한 각종 소송 내지 클레임 제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1) 대외적 전략

우선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등을 활용하여 「CSRD」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입장 등을 적극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¹⁶⁾

비록 「CSRD」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트럼프 2기 ESG 정책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ESG 및 친환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일환으로 미국은 ESG 관련 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한다.¹¹⁷⁾ 이 경우 「CSRD」의 적용을 받게 되는 미국 기업들(직접 공시대상에 포함되거나 공시의무는 없더라도 공시대상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향후 「CSRD」의 적용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2) 대내적 전략

EU 집행위원회는 「CSRD」에 따라 지속가능정보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대략 49,000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¹¹⁸⁾ 만일 향후 옴니버스 패키지가 승인된다면 80% 정도의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옴니버스 패키지가 승인되어 일부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EU 내 대기업이나 비EU 지배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공시기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옴니버스 패키지가 언제 승인되어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될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가 오히려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¹¹⁹⁾ 우리 기업은 향후 입법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EU 기업을 위해 완화된 「ESRS」 기준을 숙지하고 최종 모회사는 기업집단 내 「CSRD」 컴플라이언스를 일원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업에 「CSRD」의 요건, 준수사항 등 컴플라이언스 전략(기업의 CSRD 보고 전략, 이중 중대성 평가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 가치사슬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안내하고 기업들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커니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비용 및 그로 인한 법적 리스

116) 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 연합 사무국(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과 같은 기관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2023년 6월 13일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Janet Yellen)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CSRD가 미국의 최종 모기업에 부과하는 부담 및 역외적용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https://www.congress.gov/118/chrhg/CHRG-118hrg53178/CHRG-118hrg53178.pdf> 참조.

117) Pinsent Masons 2024. 11. 11.자 보도자료(<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businesses-could-face-esg-uncertainty-under-trump-presidency>) 참조.

1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52021SC0150>).

119)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U 옴니버스 계획 주요 내용”, 2025. 3. 20.자 회의안건, 12면에서는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불명확해지고 대응 전략 수립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크를 최소화하고, EU 및 각 회원국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 「NFRD」의 적용을 받는 EU 기업들은 2025년 4월 현재 「CSRD」 및 「ESRS」에 따른 지속가능 보고를 진행 중인바, 당해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관할마다 상이한 공시 및 보고제도의 존재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각 보고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국내 입법 및 제도 정비시 「CSRD」 및 「ESRS」의 보고기준을 적극 활용하거나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CSRD」는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의 핵심이며, 비재무정보 내지 지속가능정보의 공시에 관한 기준을 가장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룬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정 요건 충족 시 EU 내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비EU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효과를 갖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SRD」가 ESG 공시에 있어서 매우 진전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상 기업들은 그 자체로 구축력을 갖는 「ESRS」를 기준으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의 취합과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은 여전히 난해한 영역이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

망 내 포함된 다른 기업들이 가치사슬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추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EU는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CSRD」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그에 따라 기존 공개된 「ESRS」 역시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위 개정안이 EU 내에서 최종 승인, 시행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비EU 지배기업의 적용조건이 EU 내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등으로 일부 완화되었으나, 비EU 지배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위 요건을 상회하기 때문에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EU 지배기업에 대해 보다 완화된 「NESRS」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글로벌 공시 규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CSRD」를 비롯한 EU의 ESG 규제 정책은 지속가능한 산업과 경제를 추구하는 보편 이념에 입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EU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큰 비용을 수반하는 또 하나의 규제장벽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CSRD」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삼일회계법인,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 2023.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U 옴니버스 계획 주요 내용」, 2025. 3. 20.자 회의안건.

〈영문문헌〉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815 of 17 December 2018 supplementing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the specification of a single electronic reporting format (Text with EEA relevanc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ommittee of European Auditing Oversight Bodies, “CEAOB guidelines on limited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ing”(https://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8ac2df18-2ae1-4bc7-9d87-a4a740e48f5e_en?filename=240930-ceaob-guidelines-limited-assurance-sustainability-reporting_en.pdf&prefLang=ro.).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transparenc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formation about issuers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2001/34/EC.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4/253/EEC (Text with EEA relevance).

Directive 2013/3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reports of certain types of undertakings, amending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Text with EEA relevance.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Text with EEA relevance.

Directive (EU) 2025/79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April 2025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Text with EEA relevance).

EFRAG, “ESRS Regulation”, 2023.

EFRAG, “EFRAG IG1: Materiality Assessment”, Implementation Guidance, 2024.

EFRAG SRB에서 내부 승인된 Full ESRS와 NESRS에 대한 비교문서(https://www.efrag.org/system/files/sites/webpublishing/Meeting%20Docume

nts/2411071010244152/06-02.2%20
NESRS%20ED%20compared%20to%20
delegated%20act%20SRB%20250226.pdf).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Simplification Omnibus I and II,
2025.2.26.

KPMG, “Global CSRD Scoping Webcast”, 2024.

Pinsent Masons 2024. 11. 11.자 보도자료([https://
www.pinsentmasons.com/out-law/news/
businesses-could-face-esg-uncertainty-
under-trump-presidency](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businesses-could-face-esg-uncertainty-under-trump-presidency)).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06/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0
final 2025/0044 (COD).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1 final 2025/0045 (COD).

Regulation (EU) No 537/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statutory audit of public-interest entities
and repealing Commission Decision
2005/909/EC (Text with EEA relevance).

2023. 6. 13.자 미국 의회 청문회 재무장관 자
넷 옐런(Janet Yellen)의 발언([https://
www.congress.gov/118/chrg/CHRG-
118hhrg53178/CHRG-118hhrg53178.pdf](https://www.congress.gov/118/chrg/CHRG-118hhrg53178/CHRG-118hhrg53178.pdf)).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Youngju KIM

Partner at Shin & Kim LLC
(yjukim@shinkim.com)

Janelle J. HYUN

Foreign Attorney at Shin & Kim LLC
(jhyun@shinkim.com)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is one of the key legislative components of the EU's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Effective as of January 5, 2023, the 「CSRD」 not only replaces the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adopted in October 2014, but also amends a range of EU directiv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reporting obligations.

The scope of the 「CSRD」 extends beyond companies previously subject to the 「NFRD」. Namely, it now applies to other large companies within the EU,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listed in EU, and subsidiaries and local branches of non-EU parent companies that meet certain revenue thresholds within the EU. Notably, the 「CSRD」 also requires information from, and thereby affects, non-EU parent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within value chain.

Reporting obligations will be phased in by entity type starting in 2025, and when their reporting obligations take effect, companies must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porting standards. The reporting framework is composed of several standards: the full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applicable across all industries, sector-specific 「ESRS」, reporting standards for listed SMEs (LSME), voluntary standards for non-listed SMEs (VSME), and the non-EU 「ESRS」(NESRS) for non-EU companies.

On February 26, 2025,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Omnibus package proposing amendments to the 「CSRD」 and other major EU regulations related to sustainability. This package consists primarily of two components: a deferral of reporting obligations for certain companies by two years ('Stop-the-Clock Directive'), and a regulatory simplification proposal that adjusts the scope and content of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the 「CSRD」('Substantive Directive'). If approv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 Council, the proposed changes may lead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companies subject to the 「CSRD」, a simplified reporting framework with fewer data points, the withdrawal of part of 「ESRS」, and the delay or abandonment of reasonable assurance. However, at this stage, it remains uncertain how the current 「CSRD」 framework will be amended in its final form.

Given these developments, companies, particularly those with subsidiaries in the EU, should closely

monitor the evolving regulatory landscape, especially provisions that may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operations. In particular, it is critical to assess whether the company falls, and will continue t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SRD」, as well as to monitor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y gold plating as the 「CSRD」 is transposed into the national laws of individual EU Member States.

As disclosure requirements become more standardized and enforcement risks increase, the compliance burden and associated costs for entities are expected to rise significantly.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SRD」 and similar global regulatory trends, Korean companies should develop long-term strategies to integrate and streamline their reporting systems, reassess their approach to double materiality, and improve data collection capabilities across their value chai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mechanisms that enable companies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responding to global regulations.

Keywords :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SG Disclosure, EU Omnibus Package, Double Materiality, Sustainability Reporting, Value Chain,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